

장학금 지급 운영지침

[명칭 변경 2015. 9. 1.]

2015. 3. 1 제정

2015. 9. 1 개정

2022. 3. 1. 개정

2024. 11. 1. 개정

주무부서 : 적십자간호대학 교학지원팀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중앙대학교 “장학금 지급 규정” 과 “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” 에 의거 적십자간호대학(이하 “간호대학” 이라 한다) 장학금의 효율적인 운영·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명칭변경 2015.9.1.>

제2조(운영)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
- 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학생지도(장학)위원회에서는 매년 간호대학에 배정되는 특성화장학금 예산 사용(안)을 수립하여 학장에게 제출한다. <2022.3.1.개정>
- ② 해당 위원회에서는 상위 관련 규정과 시행세칙에 의거, 당연 배정되는 장학금 종류별로 매년·매학기 대상자 및 장학금액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3조(종류) 장학금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상위 관련 규정과 시행세칙에 의거, 지급되는 성적우수장학금과 기타 제 장학금
- ② 특성화장학금의 세부 장학금 <2022.3.1.개정>
 - 1. 일취월장장학금
 - 2. 근로장학금
 - 3. 특별장학금
 - 4. 학생교육활동장학금
 - 5. 해외단기교류장학금
 - 6. 멘토링장학금

제4조(선발인원 및 지급기준) 상위 시행세칙에 의거 지급하되, 세부사항이 명기되지 않은 일부 장학금과, 특성화장학금 세부 장학금별 선발인원, 지급액 및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. <2022.3.1.개정> <2024.11.1.개정>

1. 일취월장장학금

구분	인원(명)	지급액	지급기준	비고
1순위	학년별 1	100만원 내외	- 전전학과와 직전학기 성적 대비, 성적향상이 높은 학생 순으로 선발. - 예산범위 내에서 학년별, 학기별 탄력선발. - 예산 허용 범위 및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(단, 사업비 배정예산 우선 지급)	
차순위	일정인원	70만원 내외		

2. 근로장학금

구분	인원(명)	지급액	지급기준	비고
근로 제공자	일정인원	총근로시간*시간당 책정금액	- 대상자별 근로시간은 주당 10시간, 월별 40시간 이내 - 시간당 장학금액 책정은 학생지원팀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학기별 지급 - 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	근로장학생 필요시 수시모집

3. 특별장학금

구분	인원(명)	지급액	지급기준	비고
명예선양자 공로자, 소득분위 상위자중 실제 가계곤란자 등 선발자	일정인원	일정액	- 대학 명예선양자, 학교발전 공로자 등 대학장 또는 학과장이 추천하는 자 - 소득분위는 높으나 실제 가계가 곤란한 자로 지도교수 특별 추천자 - 예산 허용 범위 및 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<2024.11.1.개정>	

4. 학생교육활동장학금

구분	인원(명)	지급액	지급기준	비고
간호교육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참여 대상자	일정인원	일정액	- 매학년도 프로그램 운영계획/시행시 지급(안) 수립 - 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(단,부총장 또는 총장의 허가 득함 전제) - 예산 허용 범위내에서 일정금액 결정 지급	

5. 해외단기교류장학금

구분	인원(명)	지급액	지급기준	비고
해외현장학습, 해외 의료봉사 등 선발 참가자	일정인원	일정액	- 매학년도 프로그램별 선발계획/시행시 지급(안) 수립 - 예산 허용 범위 및 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 (단, 사업비 배정예산 우선 지급)<2024.11.1.개정>	대외협력처 위원회 공조

6. 멘토링장학금

구분	인원(명)	지급액	지급기준	비고
멘토	일정인원	멘토링활동시간 *일정액	- 매학년도 프로그램 운영계획/시행에 의거 지급(안) 수립 - 예산 허용 범위 및 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 (단, 사업비 배정예산 우선 지급)<2024.11.1.개정>	멘토: 교우(멘티)의 원활한 학교 생활과 학습능력 배양 및 학습공동체 활동 증진에 기여한 자

제5조(준용)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중앙대학교 “장학금 지급 규정” 과 “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” 을 준용한다.

부 칙

-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5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.
- (시행일) 이 개정 운영지침은 2015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2016.02.29.이전 시행한 사항은 종전 내규에 적용한 것으로 본다.
- (시행일) 이 개정 운영지침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시행일) 이 개정 운영지침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시행일) 이 개정 운영지침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